

# 직원명예퇴직규정

시행일 : 2023. 10. 06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 경희학원(이하‘법인’이라 한다) 정관 제84조 제2항에 따라 경희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행정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행정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 및 순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심의)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직원인사위원회 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제4조(심의사항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.

1. 학년도별 명예퇴직 정원
2. 명예퇴직자의 선정
3.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액
4. 기타 명예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5조(신청) ①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신청자격) ①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본교의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15년 이상 근속한 자가 특별한 사유를 가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명예퇴직대상자의 선정 등) ① 인사처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
2. 근속년수
3. 직급 및 직위
4. 연령
5.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
6.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③ 인사처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,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.

제8조(명예퇴직 신청의 철회)

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 제3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처우) 명예퇴직자에게는 [별표1]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

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기 할 수 있다.

제10조(순직 직원에 대한 특례)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. 단.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업무 외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본교 발전에 공헌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액의 지급 규모는 [별표]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총액의 범위 내에서 제7조 제2항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1조(보칙)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

구분	정년 잔여기간	산 정 기 준
1	1년 이상 5년 이내	월평균임금 × 50% × 정년잔여월수
2	5년 초과 10년 이내	월평균임금 × 30% × (정년잔여월수 - 60개월)

[비 고]

① 정년 잔여기간을 5년 초과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은 위표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.

②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기산은 명예퇴직자의 퇴직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절사한다.

③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④ 퇴직해당월임금은 본봉 · 보직수당 · 특수근무수당 · 자격수당 · 조정수당 · 급량비를 포함하며,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말한다.